
2014년도 임금 및 보충협약서

2014. 10. 15.

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노동조합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

전 문

(재)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노동조합(이하 '조합' 이라 한다)과 (재)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(이하 '재단' 이라 한다)은 본 임금협약을 체결하며 쌍방의 신의와 성실로써 엄정히 준수·이행할 것을 약속한다.

제1장 총 칙

제1조(적용범위) 이 협약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조합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.

제2장 임 금

제2조(임금의 원칙) ① 재단은 제1조에 따른 임금은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.

② 임금 및 노동조건에 관한 제 규정과 방침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협의하여야 한다.

제3조(임금인상) 조합원의 임금인상은 매년 임금협약 또는 단체교섭을 통하여 결정하며, 타결시점과 무관하게 매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.

제4조(2014년도 임금인상) ① 재단은 조합원에게 연봉월액 기준 평균 80천원(책임급 1.3%, 선임급 1.9%, 원급 2.9%)을 균등하게 인상하여 지급한다.

② 대졸초임 삭감분에 대하여 11월부터 기존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원상회복한다.

③ 임금인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.

가. 임금은 기본연봉, 성과연봉, 연봉외 급여로 구성한다.

나. 기본연봉과 연동되는 항목은 성과연봉, 시간외수당 등으로 한다.

④ 임금총액대비 평가 성과급 비중은 제반규정을 고려하여 정한다.

⑤ 수당은 전년수준보다 저하되지 않게 한다.

제5조(기타 복리후생) 기타 복리후생 관련사항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.

제3장 보충협약

제6조(경력평점) 조합원의 경력평점 산출시 경력환산기준시행요령에 따라 군 경력기간을 인정한다.

제7조(선택적 복리후생) 재단은 조합원의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며, 복지포인트를 조합원에게 102만원/인·년을 지급한다.

제8조(유효기간) ① 본 협약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② 이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종전 협약의 효력은 유지된다.

부 칙

제1조(명칭변경) 이 협약은 재단 및 조합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유효하다.

제2조(협약의 보관) 이 협약을 증거하기 위해 2부를 작성하여 재단과 조합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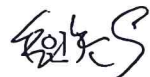
제3조(불이행 책임) 이 협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진다.

위의 사실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.

2014. 10. 15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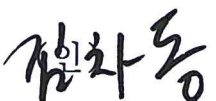
(재)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노동조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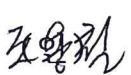
위원장 임 만 혁 

교섭위원 송 한 옥 

교섭위원 기 공 서 

(재)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

이사장 김 차 동 

교섭위원 조 용 철 

교섭위원 임 민 수 